



의안번호	제 2007 - 10 호
의 결 연 월 일	2007. 10. 8. (제 4 차 회의)

의
결
안
건

양형자료조사 실시계획 및 입력시스템 개선의 건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운영지원단장
-------	------------------

1. 의결주문

『양형자료조사 실시계획 및 입력시스템 개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나라 양형현황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과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양형자료조사 실시계획 및
입력시스템 개선안』을 의결하여 과거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
료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 기간

- 2004. 3. 1. ~ 2007. 2. 28. 3년 동안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판
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을 조사함(1심 판결에 대한 상소심 사
건 포함)

나. 조사대상사건의 유형

- 고정사건(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을 포함함

다. 조사대상사건의 수

- 총 684,294명 중 약 70,000명을 조사함

라. 조사대상사건의 결정 방법

-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되, 범죄발생빈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범죄를 결정함

마. 조사방법

- 조사대상사건에 대한 형사기록과 판결문 등을 모두 조사함

바.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양형조사 방법

-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조사는 경합범 유형에 따라 조사의 범위를 차별화하여 조사함

사. 양형자료조사의 기간

- 원칙적으로 2008. 2. 29. 조사를 완료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아. 조사의 주체

- 운영지원단이 법원 일반직 직원 등을 활용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함

자. 조사의 방법

- 1차 조사
 - 2007년 12월까지 약 3만 건의 사건을 범죄유형별로 조사함
- 2차 조사
 - 2008년 2월까지 나머지 약 4만 건의 사건을 범죄유형별로 조사함

차. 입력시스템 개선

- 기존의 양형자료분석관 입력시스템에 양형인자를 추가하는 등 입력시스템을 개선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함

4. 참고사항

- 「양형자료조사 실시계획 및 입력시스템 개선안」
 - : 붙임과 같음
- 별지 설명자료와 같음

양형자료조사 실시계획 및 입력시스템 개선안

I. 과거 확정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기간·대상·방법

1. 양형자료 조사 기간

2004. 3. 1. ~ 2007. 2. 28. 3년 동안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의 양형자료를 조사항(1심 판결에 대한 상소심 사건 포함)

2. 양형자료 조사대상사건

가. 조사대상사건의 유형

형사합의(고합)사건, 형사단독(고단)사건, 형사단독(고정)사건을 모두 조사항

나. 조사대상사건의 수

2004. 3. 1. ~ 2007. 2. 28. 3년 간 1심 법원에서 처리된 피고인 684,294명 중 약 70,000명을 조사항

다. 조사대상사건의 결정 방법

2004. 3. 1. ~ 2007. 2. 28. 3년 동안의 전체 범죄 중 범죄발생 빈도 수가 적은 범죄를 제외한 모집단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하여 표본을 추출한 후 중요도를 감안하여 조사대상사건을 결정 함

다만, 고정사건의 표본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함

3. 조사방법

조사대상사건에 대한 형사기록과 판결문(판결 전 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판결 전 조사보고서 포함)을 모두 조사함

4.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양형조사 방법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조사는 경합범 유형에 따라 조사의 범위를 차별화하여 조사함

II. 양형자료조사의 기간

양형위원회 의결 이후 양형자료조사에 착수하여 원칙적으로 2008. 2. 29.까지 조사를 완료함
다만, 추가 양형자료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III. 조사의 주체

운영지원단이 법원 일반직 직원 등을 활용하여 양형자료조사를 담당함

IV. 입력시스템 개선

양형자료분석관 입력시스템을 양형인자를 보충하는 등 개선하여 양형자료를 입력함

다만, 양형인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의 점검을 받도록 함

V. 조사의 방법

2007년 12월까지 1차로 약 3만 명의 사건을 범죄유형별로 조사하고, 2008년 2월까지 2차로 약 4만 명의 사건을 조사함